

관계 법률 요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TVPRA)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민자인 경우-

-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거주를 보장
- 피해자의 특정 가족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
- 노동 허가서 발급
-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공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

- 가해자 상대로 소송 제기의 기회 제공
-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명시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은 이민자의 경우:

-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거주를 보장
- 피해자의 특정 가족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
- 노동 허가서 발급

평등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다음과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특히 청소년 노동자의 착취로부터 보호 조항
- 노동력 착취 피해자가 고용주 상대로 소송 제기의 기회 보장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여성과 청소년 이민 노동자의 권리 증진: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은 여성과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사례에 법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 1974년에 설립된 이래 법적 대변, 권익증진,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통해 이민자 권리, 투표권리, 경제적 정의 실현, 혐오 범죄 및 경찰 공권력 남용 등과 연관된 아시아나메리칸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정의 실현
- 평등 교육과 청소년 권리
- 주택 정의 프로젝트
- 이민자의 권익 증진
- 투표 권리 보호 프로젝트
- 뉴저지 아시아나메리칸 법률 프로젝트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은 뉴욕차별방지네트 워크 (NYATN)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 문의: **Ivy Suriyopas, Staff Attorney**
Phone: 212.966.5932 x235
E-mail: isuriyopas@aaldef.org

사건 이관: **Mabel Tso**
Phone: 212.966.5932 x224
Email: mtso@aaldef.org



여성과 청소년 이민 노동자의 권리 증진

아시아나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99 HUDSON STREET, 12th FL
NEW YORK, NY 10013-2815
TEL 212.966.5932 FAX 212.966.4303
www.aaldef.org

노동자의 기본 권리

- 모든 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노동자는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동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최저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감금 상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신 매매

노동자 매매: 사기 및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성 매매:

- 사기 및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 혹은
-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 위반 행위

- 연방 또는 주 최저 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직장을 사직하면 특정 고용 계약 조항을 위반하게 되거나 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인신매매에 대한 구체적 이해

- 인신매매는 밀입국과 다른 개념입니다. 밀입국은 허가 없이 국경을 자의로 통과하는 행동입니다. 이민자가 인신매매로 인해 밀입국을 한 후 노동을 강요 당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인신매매는 매춘업, 기타 성매매 업종 외의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농장, 식당,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가사일을 하는 가정부 등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 혹은 강제 결혼은 강요 받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 인신매매는 고용 위반 이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위반 행위는 최저 임금 또는 추가 수당 미지급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는 단순 고용 위반을 넘어 학대나 강제 노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사람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50%는 아동이고, 80%가 여성입니다.
- 미국 시민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 영주권자 및 서류미비자 등 모든 사람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행위의 식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노역을 강요 당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희생을 기반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유발하는 경우
- 강제구금과 추방의 발생
-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류하는 행위
-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 타인과 분리되어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 전화 통화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거나 감청 당하는 경우
- 직장을 사직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 행동을 통제, 조정하는 사람과 항상 동행하는 경우
- 피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경우
- 고용과정에서 빚을 떠 안기고 이를 갚기 위해 일하는 경우
- 고용 위반—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방 또는 주 최저 임금을